



보도	2023.6.23.(금) 조간	배포	2023. 6. 22. (목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	책임자	부국장	박정은	(02-3145-8140)
		담당자	선 임	차정은	(02-3145-8137)
	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박혜정	(02-3705-5040)
		담당자	과 장	김태형	(02-3705-5245)
	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김동오	(02-2003-9420)
		담당자	대 리	최지용	(02-2003-9427)
	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김태훈	(02-2011-0784)
		담당자	조사역	이정훈	(02-2011-0628)
	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양희경	(02-397-8680)
		담당자	차 장	이용석	(02-397-8681)
	농협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	책임자	팀 장	송재철	(02-2080-2221)
		담당자	계 장	김윤환	(02-2080-2225)
	수협중앙회 디지털금융팀	책임자	팀 장	신기루	(02-2240-2211)
		담당자	과 장	박경준	(02-2240-2221)
	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	책임자	부 장	엄선홍	(02-2145-9545)
		담당자	차 장	허진녕	(02-2145-9549)
	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본부	책임자	본부장	박용남	(042-720-1462)
		담당자	차 장	박미연	(042-720-1465)

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

-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-

주요 내용

-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
-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

1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동향

- '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(계좌이체형)은 1,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'19년 이후 감소 추세
 - 다만,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,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

최근 보이스피싱 특징

- ① **대면편취형 증가** :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 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(경찰청 통계 : '19년 8.6% → '22년 64.3%)
- ② **범죄수법 지능화** : 오픈뱅킹·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
- ③ **신종사기 성행** :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* 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
 - *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
- ④ **교묘해지는 사기수법** : 불특정 다수가 아닌,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* 증가
 - * 수출업체에 환전 및 송금 사기, 대학교 지원자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사기, 대출보유자에 대한 대환대출 사기 등

보이스피싱 피해 현황

(단위 : 건,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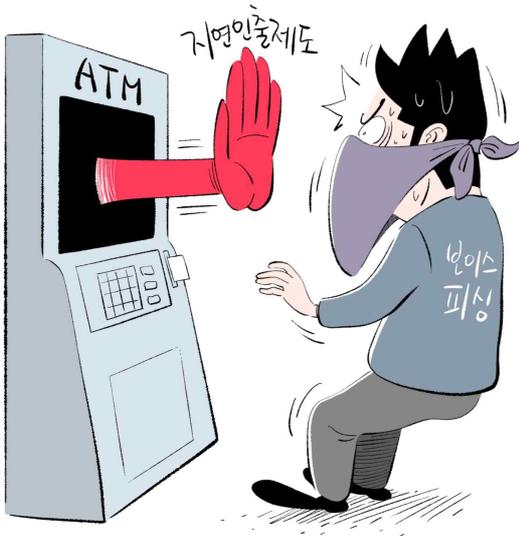
구 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증감률('21~'22)
피해금액(비중)	6,720	2,353	1,682	1,451	△13.7%
대출빙자형	4,506	1,566	521(31%)	311(21%)	△40.5%
사칭형	2,214	787	1,161(69%)	1,140(79%)	△1.8%
가족·지인사칭	342	373	991(59%)	927(64%)	△6.5%
기관사칭	1,872	414	170(10%)	213(15%)	25.2%

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

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계좌 안전하게 관리하세요!

-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
 -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,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
-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(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 불요)
 -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,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음(각 금융회사에 확인)

① ATM 지연인출 제도[공통 적용]



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(ATM/CD기)로 인출·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

② 지연이체 서비스[사전 신청]



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(최소 3시간)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*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

*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

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[사전 신청]



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 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,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*만 가능

*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

④ 단말기 지정 서비스[사전 신청]



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(스마트폰, PC 등)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,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

⑤ 해외 IP 차단 서비스[사전 신청]



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(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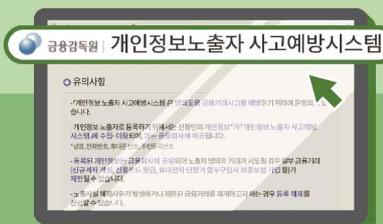
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[카드사]



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

3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

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세요!

<p>계좌 지급정지</p>  <p>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</p>	<p>개인정보 노출 등록</p> <p>https://fine.fss.or.kr https://pd.fss.or.kr</p>  <p>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'파인'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 피해 예방</p> <p>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</p>
<p>내계좌 통합관리</p> <p>www.payinfo.or.kr</p>  <p>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고, 필요시 일괄지급정지</p>	<p>휴대폰 명의도용 방지</p> <p>www.msafar.or.kr</p>  <p>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</p>

1 계좌 지급정지

-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(☎1332)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*하여 계좌 지급 정지

*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

-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'사건사고사실 확인원'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

※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

2 명의도용 계좌·대출 확인(내계좌 통합관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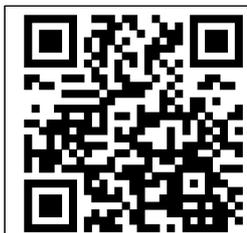
- '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'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* 또는 대출**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
*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**금융정보조회 > 대출정보조회
-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'내계좌지급정지'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(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> 내계좌지급정지)

3 개인정보 노출 등록

-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,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'개인정보노출자'로 등록*
*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> 신고·상담·자문서비스 > 개인정보 노출 등록·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<https://pd.fss.or.kr>)에서 등록가능
-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

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

- '명의도용 방지서비스(www.msafes.or.kr)'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,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
-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
-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「가입제한 서비스」*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
* 엠세이퍼>명의도용방지서비스>가입제한서비스



➔ QR 코드로 접속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시 대처요령과 주요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!



➔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